

서울특별시

☎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31 / 전송 731-6135
 처리부서 : 기획담당관(시청본관 4층) 담당 : 박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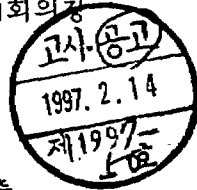
문서번호 기획13130 - 106

시행일자 1997. 2. 14.

(경유) (제1안)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참조 의사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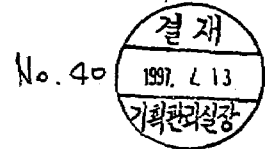
취급		시	장
보존		ky	
기획관리실장	전 결		
기획담당관	박범	법무담당관실사관	
의회협력계장	이		
기안	박 범	협조	

제목 부의안건 제출

지방자치법 제58조 2항 규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부의안건(5건) : 조례안 4, 동의안 1건

첨부 1. 부의안건 목록 1부.
 2. 의안 5건 2부. 끝.



서울특별시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의뢰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부의안건을 첨부와 같이 공고 의뢰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안건(5건) : 조례안 4, 동의안 1건

첨부 공고문 1부. 끝.

기 획 담 당 관

부 의 안 전 목 록

구 분	부 의 안 전 명	주 관 부 서
조 례 안 (4건)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정개발담당관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 사 과
	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행정과
	4.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
동 의 안 (1건)	1.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	치 수 과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 - 50 호

공고번호	1997.2.13제 50호
담당자	법제심사계장 권부담
	소 재 자
	서

시 의 회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 관 부 서
조 례 안 (4건)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시정개발담당관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인 사 과
	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세무행정과
	4.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
동 의 안 (1건)	1.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	치 수 과

